

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					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신설	공 원	묘지공원	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등 일대	130,320	서울추모공원 건립부지

나. 도시계획시설(화장장) 결정							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(m ²)	건축규모			비고
				건폐율	용적률	높이	
신설	화장장	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68번지 일대	39,700	20% 이하	50% 이하	지반고에서 25m 이하	

3. 입안사유

- 서울시민의 화장률은 1998년 30% 미만에서 2000년 50%를 초과하였으며 2005년에는 70%에 이르러 1일 69구~97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나 벽제승화원이 확보하고 있는 23기의 화장로로는 처리가 불가하고
- 추모의집 또한 벽제리, 용미리 등 6개소에 63,827위를 갖추고 있으나 이 또한 내년 3월이면 만장되어 더 이상 납골이 불가능한 실정임으로
-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1,000만 서울시민의 복지시설로서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 결정하고자 함.

4. 추진경위

- '98.11. : 서울추모공원 후보지 선정 작업 착수
- '99. 6. : 25개 후보지 선정(서울지역 13개소, 경기지역 12개소)
- '00. 8. : 추모공원건립추진위 발족(서울시·장개협·SK)
- 학계·종교계·언론계·여성계·시의회·시민단체·전문가 등 32명
- '01.1~7 : 추모공원부지선정심사위 구성·운영

(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면 적 (m ²)			구성비	비 고	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	
계	70,954m ²	-	70,954m ²	100%		
주거지역	일반주거지역	70,954m ²	감70,954m ²	-		
	제1종일반주거지역	-	증 1,564m ²	1,564m ²	2.2%	도로부분
	준주거지역	-	증 15,160m ²	15,160m ²	21.4%	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-	증 54,230m ²	54,230m ²	76.4%	

3. 입안사유 (계속)

- 각 분야 전문가, 각계 시민대표 등 18명
- '01.3~5 : 후보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(3회)
- '01. 7. 5 :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에서 2개소 추천
-서초구 원지동, 강서구 오곡동
- '01. 7. 9 : 원지동을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
- '01. 8.10 : 도시계획안 공람공고

5. 참고사항

-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: 이견 없음
- 주민의견청취 결과 : 별첨 참조
- 장사법 개정(2001. 1 시행) :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 장묘시설 확보 의무화

도시계획 결정에 의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894	제출년월일 : 2001. 6. 9
		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

2. 입안내용
가. 용도지역

(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사유							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도 지역		면적 (㎡)	용 적 륜		변 경 사유
		기 정	변 경		기준	허용	
1	신대방동 701-11호 일대 (도로부분)	일반 주거지역	제1종일반 주거지역	1,564	-	-	도로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
2	신대방동 686-24호 일대	"	준주거지역	15,160	240~300% 이하	360% 이하	지역중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지역으로 변경
3	신대방동 686-5호 일대	"	일반상업 지역	54,230	300% 이하	550~630% 이하	"

<p>3. 입안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작구 신대방동 686번지 일대는 '97년 확정된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어, 이 지역을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하여 '97. 9.29 지구단위계획구역(중전 상세계획구역)을 지정하였으며, 이후 지구단위계획안이 수립됨에 따라 이에 적절한 용도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입안하는 것임. <p>4. 추진경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997. 9.29 :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서고 	<p>시 제1997-304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위 치 : 동작구 신대방동 686번지 일대 -구역면적 : 74,100㎡ ○ '2000. 5.10 : 지구단위계획안 공람공고(동작구공고 제2000-125호) -공람기간 : 2000. 5.10 ~ 5.25(14일간) -공람시 제출의견 : 없음 ○ '2000.12. 8 : 교통영향평가 심의필(관리번호 제2000-81호) ○ '2000. 2. 5 :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(동작구고시 제2001-4호)
--	--

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동작구 신대방동 686번지 일대	74,100㎡	감)3,146㎡	70,954㎡	구역변경없이 면적정정

<p>○ 2001. 5.28 : 지구단위계획결정 요청(동작구→시)</p> <p>5. 참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계획과의 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띠모양의 소규모 도로부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중인 사항과 관련하여 건교부의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"2개(용도)지역을 경계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의 중심선을 지역의 경계로 조정 요망 -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 도로로 위요된 ㉔번 회차의는 공원화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 에 대해 검토바라며, 그럴 경우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특별계획구역간의 분담 문제 	<p>는 별도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대림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시 중심지체 계상 지역중심으로 영등포구, 구로구, 관악구와 연결하여 있는바, 용도지역계획은 4개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함이 합리적인 것임. ※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상업지역 지정을 위한 공간수요추계상 지역중심에서의 상업지역 배분면적 38,000㎡로서 관악구 14,920㎡, 영등포구 19,280㎡, 구로구 약 9,000㎡(도시계획위원회 심의-결정 고시에 따라 면적 변경 가능)로서 상업 지역 면적의 합이 약 42,000㎡가 되는
---	---

바, 공간수요 추계 및 당해 지구단위 계획의 입지성을 고려할 때 상업지역의 추가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-용도지역 배분방안으로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입안된 중의계약(신대방동 689번지), 대한 광업진흥공사(698-48호), 태평양(686-54호), 일화모직(686-4호)등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 하되, 당해부지를 특별계획구역(입안됨) 지정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시 추후 변경결정하고,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단지로 개발할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-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신대방동 686-24호 일대는 양호한 환경의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일반주거지역 세분지정을 위한 검토기준에 의거 용적률 및 층수 등으로 판단할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 이하) 대상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협의 대상지역이고, 지역중심으로 서 간선도로변 연결부지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바, 제2종일반주거지역(12층 이하)로 지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-도로용지에 대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연결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연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요망

○ 도시관리과 의견

-신대방길과 시흥대로를 경계로 관악구, 구로구, 영등포구, 동작구 등 4개 자치구에서 각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거나,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특별계획구역

인 광업진흥공사, 태평양, 일화모직부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한 동 지구단위계획은 신대방길과 단절된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판단됨.

-일부 특별계획구역은 공동주택(아파트)을 신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별계획구역 지침에서 추후 세부개발계획결정시 계획안에 맞춰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 (아파트 입지시에는 일반주거지역 존치)

* 기 결정된 대림지역중심(타 자치구)의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상업지역 소요추정에 따라 상업지역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

-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지역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이므로 주거지역 존치가 바람직하며,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공지 등 완충지대 설치 바람직

○ 시설계획과 의견

-용도지역 조정과 관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휴식공간(공원, 녹지 등)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요함.

도시계획 결정에 의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 895 제출년월일 : 2001. 6. 9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·지구 변경결정
2. 입안내용 :

가. 용도지역

(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	비 고	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	
계	116,426㎡	-	116,426㎡	100%		
주거지역	일반주거지역	116,426㎡	감116,426㎡	-		
	제1종일반주거지역	-	증30,025㎡	30,025㎡	25.8%	도로 및 광장
	제3종일반주거지역	-	증32,510㎡	32,510㎡	27.9%	
	준주거지역	-	증41,544㎡	41,544㎡	35.7%	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-	증12,347㎡	12,347㎡	10.6%	

(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사유
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 도 지 역		면적 (㎡)	용 적 륜		변 경 사 유
		기 정	변 경		기준	허용	
1	상도동 366-1호 일대	일 반 주거지역	제1종일반 주거지역	30,025	-	-	도로 및 광장의 용도지역 세분화
2	노량진동 314, 315번지, 상도동 363-3호 일대	"	제3종일반 주거지역	28,980	200% 이하	200% 이하	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
3	상도동 373-1호 일대	"	제3종일반 주거지역	3,530	200% 이하	250% 이하	지구중심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으로 세분화
4~7	상도동 370-12, 176-1, 183-15, 363-164호 일대	"	준주거 지역	41,544	240~ 300% 이하	360% 이하	"
8~10	상도동 368-19, 366-22, 365-4호 일대	"	일반 상업지역	12,347	300% 이하	600~ 630% 이하	"

나. 용도지구

(1) 용도지구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면적	연장	폭원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1	도림로 미관지구	역사문화 미관지구	· 장승배기광장 서측 : 노량진동 315-1~ 상도동 366-38 · 장승배기광장 남측 : 상도동 183-3~ 상도동 368-11	4,420㎡	385m	양측 7~12m	서고시 제164호 (*82.4.22)	장승배기길 상도동길
변경			일 반 미관지구	· 장승배기광장 서측 : 노량진동 315-1~ 상도동 366-38 · 장승배기광장 남측 : 상도동 183-3~ 상도동 364-36	5,060㎡	438m	양측 7~12m	장승배기길 상도동길	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면적	연장	폭원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2	관악로 미관지구	역사문화 미관지구	· 장승배기광장 남동측 : 상도동 373-72~ 상도동 368-57 · 장승배기광장 동북측 : 상도동 370-27~ 상도동 25-40	4,900㎡	345m	양측 11~ 15m	서고시 제194호 (‘84. 4.17)	상도동길
변경			일반 미관지구	· 장승배기광장 남동측 : 상도동 373-72~ 상도동 368-57 · 장승배기광장 동북측 : 상도동 370-27~ 상도동 25-40					

(2) 용도지구 결정(변경)사유

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1	도림로 미관지구	· 역사문화미관지구→일반미관지구 · 장승배기광장주변 미관지구 추가 지정 · 폭원 : 7~12m · 추가연장 : 53m · 추가면적 : 640㎡	·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상향조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토지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· 장승배기역의 입지로 교통광장(장승배기광장)주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관지구 추가 지정
2	관악로 미관지구	· 역사문화미관지구→일반미관지구	·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상향조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토지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

3. 입안사유

○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는 '97년 확정된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지구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어, 이 지역을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하여 '97. 2.14 지구단위계획구역(중진 상세계획구역)을 지정하였으며, 이후 지구단위계획안이 수립됨에 따라 이에 적절한 용도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입안하는 것임.

4. 추진경위

○ 1997. 2.14 :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서고시 제1997-41호)
- 위치 :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
- 구역면적 : 117,000㎡
○ 1999.11.15 : 지구단위계획안 공람공고(동작구공고 제1999-224호)
- 공람기간 : 1999.11.15~11.28(14일간)
- 공람시 제출의견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건	검 토 결 과	반영여부
동작구 상도2동 373-55 정희곤	· 상도2동 373-55, 373-86호는 현재 상가의 구실을 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요망	· 당초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계획하였으나, 서울시협의('99. 7.23)결과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토록 심의되어 서울시 의견을 수용함.	미반영
동작구 흑석동 186-102 강경숙	· 상도2동 370-12호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바람.	· 당초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계획하였으나, 서울시협의('99. 7.23)결과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토록 심의되어 서울시 의견을 수용함.	미반영

- 2000. 6.15 : 교통영향평가 심의필(관리번호 제2000-27호)
- 2001. 2. 5 :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(동작구고시 제2001-4호)

구 역 명	위 치	면 적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	117,000㎡	감)574㎡	116,426㎡	· 도시계획(도로)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

- 2001. 5.28 : 지구단위계획결정 요청(동작구→시)
5. 참고사항
- 도시계획과 의견
 - 구역내 일부 노량진근린공원지역에 대하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이 바람직함
 - 락모양의 소규모 도로부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중인 사항과 관련하여 건교부의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"2개(용도)지역을 경계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의 중심선을 지역의 경계로 조정 요망"
 -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
 - 상도지구중심은 종전 「서울특별시 상세계획 운영지침」('97. 7)상의 중심지별 발전 잠재력 종합평가에서 중심성이 낮은(C등급)중심지로 판단되었으나, 일반상업지역으로 입안한 부지에 대하여 근린상업지역으로 하향 및 준주거지역 계획범역의 축소 요망
 - 용도지역계획안상 ⑧, ⑨, ⑩ : 근린상업지역
- 용도지역계획안상 ④, ⑤ : 준주거지역
 - 용도지역계획안상 ⑥ : 준주거지역 범역축소 (상도동 186-26~183-31호 연장선 및 183-1, 181-22호에서 도로변까지 필지선으로)
 -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한 남측주거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
 - 용도지역계획안상 ⑦ : 준주거지역 범역축소(노량진동 363-10, 363-164, 363-142, 363-274, 371-4호 필지선으로)
 -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한 북측주거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
 - 용도지역계획안상 ③ : 제3종일반주거지역
- 특별계획구역
 - 용도지역계획안상 ② :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 이하),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시 제2종일반주거지역(12층 이하)
 - 영도시장부지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요망
- 도시관리과 의견
 - 상도지구는 중심성이 낮은 지구중심으로

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한 상도동 368-19, 366-22, 365-4호 일대의 용도지역은 근린상업지역 하향 조정 필요
 -상도동 183-21호 일대(상도동 181-11호, 183-33호 도로하단) 및 상도동 363-94호 일대(상도동 363-10호, 363-164호 북측)는 양호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 요망
 ○ 시설계획과 의견
 -용도지역 조정과 관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휴식공간(공원, 녹지 등)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요함.

-장승중학교 인접지역의 용도변경(일반주거지역→준주거지역)에 대하여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 요망

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 896 제출년월일 : 2001. 6. 9
 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안건명 : 중랑구 망우동 360-1 일대 외 1개소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
2. 입안내용 :

-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사

위 치	용 도 지 역		면 적 (㎡)	비 고
	기 정	변 경		
중랑구 망우동 360-1 일대	일반주거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	2,870.5	12층 이하
중랑구 면목동 57-8 일대	일반주거지역	제1종 일반주거지역	3,145.5	4층 이하

3. 입안사유

-2000. 제10차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제출된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변경결정(폐지)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 주거지역 중의 세분화를 병행 추진하여 부지 주변환경에 부합하는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함.

-도시계획상임기획단 : 의견 없음

도시계획 용도지역·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 933 제출년월일 : 2001. 8. 20
 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안 건 명 : 도시계획용도지역(일반주거지역) 및 지구(경관지구) 변경결정
2. 입안내용

4. 추진경위

-2001. 3. 9~ 3.24 도시계획안 공람공고
 -공람공고시 제출 의견 : 없음

5. 참고사항

○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(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)

위 치	용 도 지 역			비 고
	변 경 전	변 경 후	면적 (㎡)	
동대문구 이문동 348-1 일대	일반주거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2,020	녹지율 20% 이상 확보

○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 (자연경관지구 해제)

지 구 명	지구의 세분	위 치	용 도 지 구 (㎡)			비 고
			변 경 전	변 경 후	면 적	
경관지구	자연경관지구 (원곡지구)	동대문구 이문동 348-1 일대	899,112	897,092	(감)2,020	

3. 입안사유
 ○ 주변지역의 자연경관지구가 해제('89.11.2) 되고 동 지역만이 자투리 소규모 자연경관지구로 남아 자연풍치 기능 유지가 곤란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함.

4. 도시계획사항
 ○ 일반주거지역, 자연경관지구

5.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
 ○ 주민의견청취(2001. 5. 14 ~ 5. 27) 결과 : 의견 없음
 ○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: 원안 동의
 ○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: 원안 가결
 ○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: 이견 없음

6.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: 특이사항 없음
 ○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토지이용에 큰 변화 없음.

7. 참고사항
 ○ 도시계획용도지구(미관지구) 결정조서

○ 1977.12. 3 :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(건설교통부)
 ○ 1989.11. 2 : 대상지 주변지역 자연경관지구 해제 (소규모 밀집지역)
 ○ 2000.12. 9 : 「시민과 시장의 데이트」 실시
 ○ 2001. 2. 7 : 2001년 제1차 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
 -자연경관지구 해제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

도시계획용도지구(미관지구)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 934 제출년월일 : 2001. 8. 20
 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안건명 : 도시계획용도지구(미관지구) 결정
 2. 입안내용

구분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연장(m)	폭원(m)	비고
신설	금호동길	일반미관지구	금호유수지 ~ 중구 교통회관	60,000	2,500	양측 12m	

3. 입안사유
 ○ 금호동길 확장(B=12~15m → 25m)에 따른 도로주변 도시미관 유지와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코자 함.

4. 도시계획사항
 ○ 일반주거지역

5.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
 ○ 주민의견청취(2001. 3. 16 ~ 3. 30) 결과 : 의견 없음
 ○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: 원안 채택
 ○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: 원안 동의
 ○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: 이견 없음

6.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7. 참고사항
 ○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토지이용에 큰 변화 없음.
 ○ '99. 7. 2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
 ○ 2000.12 : 실시계획 용역 준공

도시계획시설(공원, 학교)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 937 제출년월일 : 2001. 8. 20
 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안건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, 학교) 결정
 2. 입안내용

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, 학교) 변경결정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공원	관악산 도시자연공원	금천구 독산동 일대	12,409,242	-	12,409,242	· 면적변경 없이 학교와 위치변경(A=1,134m ²)
변경	학교	정심초등학교	금천구 독산동 182-44 일대	13,550	증) 2,084	15,634	· 면적변경 없이 공원과 위치변경(A=1,134m ²) · 구적 오차에 의한 증가(A= 2,084m ²)

<p>3. 입안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심초등학교의 체육장 보유면적이 기준면적보다 과부족(1,002㎡)하므로 ○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학교와 인접한 공원용지중 체육장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편입하고 ○ 기존 학교용지 중 입상이 양호한 곳을 공원용지로 대체 지정코자 도시계획 변경결정 하고자 함. <p>4. 추진경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01. 4. 7 :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01. 7. 2 : 구의회 의견청취 (원안채택) <p>5. 참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: 이견 없음 ○ 주민의견청취 결과 : 의견 없음 <p>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938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제출년월일 : 2001. 8. 20 .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</td> </tr> </table> <p>1. 안건명 : 도시계획용도지역(일반주거지역 → 제2종일반주거지역) 변경결정</p> <p>2. 입안 내용</p>	의안 번호	938	제출년월일 : 2001. 8. 20 .	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								
의안 번호	938	제출년월일 : 2001. 8. 20 .	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										
<p>○ 도시계획용도지역(일반주거지역 → 제2종일반주거지역) 변경결정</p>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 치</th> <th colspan="2">용 도 지 역</th> <th rowspan="2">면 적(㎡)</th> <th rowspan="2">비 고</th> </tr> <tr> <th>기 정</th> <th>변 경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광진구 구의동 59-36 일대</td> <td>일반주거지역</td> <td>제 2 종 일반주거지역</td> <td>3,669.4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위 치	용 도 지 역		면 적(㎡)	비 고	기 정	변 경	광진구 구의동 59-36 일대	일반주거지역	제 2 종 일반주거지역	3,669.4	
위 치	용 도 지 역		면 적(㎡)	비 고									
	기 정	변 경											
광진구 구의동 59-36 일대	일반주거지역	제 2 종 일반주거지역	3,669.4										
<p>3. 입안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부지는 기능이 상실된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2000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동차정류장 해제 안건을 상정 심의결과 주변환경에 부합하는 개발이 되도록 주거지역 세분을 동시에 하도록 보류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함. <p>4. 추진 경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977. 8. 22 :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결정(서울시 고시 제288호) ○ 2000. 4. 29 :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변경(폐지)결정 신청(구→시) ○ 2000. 11. 15 :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심의(심의결과 : 보류) ○ 2001. 3. 7 : 광진구에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○ 2001. 7. 26 : 자동차정류장부지 용도지역 변경결정 신청(구 → 시) <p>5. 참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: 제출의견 없음 ○ 상임기획단 의견 :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해체시 공공기여방안(가로변림지공원 형태의 개방공간 조성 등) 검토요망, 2종일반주거 	<p>거지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계획과 의견 :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가능하다고 판단됨, 다만 아차산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이면지역이 저층 주택가이므로 천호대로변 개방감 확보,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경관을 위하여 건축물 배치계획수립 필요. <p>※ 본 자동차정류장은 마포구에서 구의동간 55번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자인 동부운수주식회사가 '77. 3. 11. 증차로 인한 기존 노외주차장시설(668평)을 확장코자 시내버스 주차장(1,110평)신청을 하여 '77.7.21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로 결정되었으나 '77. 8. 22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으로 변경결정된 시설임.</p> <p>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</p>												